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6. 14.(수) 배포즉시 배포 2023. 6. 14.(수)

유럽연합(EU) 집행위, 「탄소국경조정제도」 이행법 초안 발표

- 개별 국가의 배출량 산정방식 활용을 허용하는 완화 규정 포함 -

6월 13일(화) 유럽연합(EU)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발효된 「**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중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이행법**」 **초안을 발표**했다.

* 탄소국경조정(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, CBAM) :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제도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에 따르면 이번 이행법 초안은 이번 년도 **10월 1일부터 특정 품목**(철강, 시멘트, 비료, 알루미늄, 전기, 수소)**을 유럽연합(EU)에 수출**할 경우 발생하는 **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**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규정하고 있다.

그간 정부는 최초 유럽연합(EU)의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발표 이후 다양한 협력 통로(채널)를 통해 **업계-정부 간 긴밀히 동향을 공유**하고 **대응 방향을 소통**해 왔으며, 특히 유럽연합(EU) 측과는 **이행법안 발표 이전 단계**부터 **❶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방식 인정, ❷세부 제도가 세계무역기구(WTO)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설계** 등을 요구하는 등 **우리 측 요청사항을 지속 협의**해 왔다.

이에 따라 이번 이행법안에는 **배출량 보고 의무의 완화 규정**(Derogation)**이 포함**되었으며, 유럽연합(EU)으로 수출하는 **우리 철강기업** 등의 **배출량 보고 의무가 상당 부분 경감**될 것으로 전망된다.

이번 발표된 **이행법안**은 4주간('23. 6. 13.-7. 11.)의 공식 의견수렴과 **유럽연합(EU) 회원국으로 구성된 위원회**의 **최종 표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**될 예정(구체적 일정 미공개)이다.

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제도의 본격 이행에서도 우리 기업이 기존 활용 중인 국내 배출량 산정방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**유럽연합(EU) 측과 지속 협의**해 나가는 한편, **'23. 10. 1.부터 시행되는 전환 기간에 기업들이 차질 없이 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**할 수 있도록 **세부 지침(가이드라인)을 준비**할 계획이다.

< 보충 설명 >

1. 그간의 경위

□ 유럽연합(EU) 의회·이사회 승인 거쳐 **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법안 최종 발효(23. 5. 17.)**
→ '23. 10. 1.부터 특정 품목을 유럽연합(EU)에 수출 시 **배출량 등 보고의무 발생**

* 2년 3개월의 전환 기간 후 '26. 1. 1.부터 제도 본격 시행 →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인증서 구매 의무 발생

□ 유럽연합(EU)은 전환 기간의 보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**이행법안 초안 공개**(6. 13.)

○ 향후 공식 의견 수렴(~7. 11.) 등의 절차를 거쳐 전환 기간 시행 전까지 이행법안을 확정할 예정

2. 이행법안 초안 주요 내용

□ 이번 발표된 이행법안 초안은 '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환 기간에 **배출량 보고 의무 관련한 주요 내용**을 명시

❶ **(보고 항목)** 개별 사업장(생산 공정)의 직·간접 배출량 및 전력 소비량, 원산지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*, 기타 증빙자료 등

* 감면 대상 탄소 가격의 종류 및 구체적 산정방식은 미발표

❷ **(보고 절차)** 수입업자에게 분기별 배출량을 포함한 리포트 제출 → 수입업자가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전자 등록부에 보고서 등록(제3자 검증서는 불필요)

* 매 분기마다 해당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필요
- (예) 23년 4분기 배출량은 24년 1월 말까지 보고

❸ **(배출량 산정)**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(EU-ETS)의 기준을 차용하여 개별 사업장(생산 공정)의 배출량 계산 후 총 생산수량으로 나누어 제품별 내재 배출량 산정*

* ①활동량×배출계수(예: 석탄 소비량×석탄 배출계수), ②직접 배출량 농도 측정 등 제품 생산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배출량 산정

- '24. 12. 31.까지는 개별국의 탄소 가격제에서 채택하고 있는 배출량 보고방식 활용도 가능('25. 1. 1.부터는 유럽연합(EU) 방식만 인정)

담당 부서	신통상전략지원관 기후에너지통상과	책임자	과 장	윤진영 (044-203-4890)
		담당자	사무관	이한솔 (044-203-489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